

인천지방법원 2022. 1. 28 선고 2019가단10971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변 론 종 결 2021. 11. 19.

판 결 선 고 2022. 1. 28.

##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9. 1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 9. 17. 접수 제3404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D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8.경부터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8. 9.경까지 14,118,055원의 카드대금이 연체된 상태였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소429395호로 신용카드대금 14,118,055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7. 11. 인용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은 1997. 5.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고, 2009. 4.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09. 4. 7. 피고와 D의 지분을 각 1/2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D은 2018. 12.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고, D은 2018.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이 소유한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D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무자력

위 인정사실 및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5, 8,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증여 무렵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107,500,000원,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 1대 100,000,000원 상당1), 소극재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46,086,055원, E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0,000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아래 표 기재 참조).

## 2) 이 사건 증여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이 2018. 9. 17. 인천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증여가 있었던 사실, 피고와 D은 위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사해행위 성립여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 제18 내지 20호증, 제2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산분할이라고 보이므로 이는 D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증여 무렵 피고와 D이 보유한 재산은 다음과 같다.

| 당사자 | 유형       | 내역                    | 금액(원)       |
|-----|----------|-----------------------|-------------|
| D   | 적극<br>재산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 107,500,000 |
|     |          |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 1대    | 100,000,000 |
|     | 합계       |                       | 207,500,000 |
|     | 소극<br>재산 | F 채무 (계좌번호 1 생략)      | 4,903,000   |
|     |          | F 채무 (계좌번호 2 생략)      | 30,249,000  |
|     |          | 원고(A)에 대한 채무          | 14,118,055  |
|     |          | G 채무<br>(계좌번호 3 생략)   | 129,376,000 |
|     |          | G 채무<br>(계좌번호 4 생략)   | 15,589,000  |
|     |          | H 채무<br>(계좌번호 5 생략)   | 9,047,000   |
|     |          | H 채무<br>(계좌번호 6 생략)   | 25,825,000  |
|     |          | I은행 채무<br>(계좌번호 7 생략) | 16,979,000  |

|    |          |                        |             |
|----|----------|------------------------|-------------|
|    |          | 개인(E)에 대한 채무           | 50,000,000  |
|    |          | 합계                     | 296,086,055 |
|    |          | 순자산 합계                 | -88,586,055 |
| 피고 | 적극<br>재산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 107,500,000 |
|    |          | J조합 출자금<br>(계좌번호 8 생략) | 1,176,935   |
|    |          | J조합 예금<br>(계좌번호 9 생략)  | 5,512,787   |
|    |          | J조합 예금<br>(계좌번호 10 생략) | 30,000,000  |
|    |          | J조합 예금<br>(계좌번호 11 생략) | 24,462,424  |
|    |          | J조합 예금<br>(계좌번호 12 생략) | 50,000,000  |
|    |          | J조합 적금<br>(계좌번호 13 생략) | 2,150,000   |
|    |          | 합계                     | 220,802,146 |
|    | 소극<br>재산 |                        | 0           |
|    |          | 순자산 합계                 | 220,802,146 |

② D은 이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화물차량의 피담보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고, 위 채무들의 상당 부분은 피고와 D의 혼인생활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D은 위 채무를 그대로 부담한 상태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만을 피고에게 이전하였다.

③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당시 피고와 D은 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D이 단독으로 계약을 인수하여 승계하였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부동산이 피고의 특유재산이라거나 피고가 매매대금을 전부 단독으로 부담하고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2009.경부터 2014.경까지 PC방, 2015.경부터 2017.경까지 음식점을 운영하고, 인천광역시 K단체에서 근무하였으나, D도 2002.경부터 화물차량 운행을 하며 경제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계좌 출금내역(을 제3 내지 7호증)을 제출하며 혼인기간 동안 자신이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차량 대출금 등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내역이 출금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와 D의 혼인기간이 20년에 이르는 점 및 그 동안의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면 D도 혼인기간 동안 공동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혼 당시 D은 피고에게 미성년자녀의 양육비로 월 1,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는바 위 재산분할에 자녀의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4) 수익자의 선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D이 부부 사이였고 이혼 후에도 피고가 D의 차량 관련 대출금 등을 납부해주는 등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효정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 동구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인천 동구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9층  호 59.92평방미터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 동구  대 10460.7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0460.7 분의 30.8387

1) 위 화물차량(차량번호 1 생략)은 이 사건 증여일인 2018. 9. 17. 이후인 2018. 10. 23.에 피고 D이 취득한 것이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은 2018. 10. 이전에는 위 차량을 지입회사에 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화물차량은 피고 D의 적극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